

■ 교육

UC 버클리 한국 학생 중도 탈락률 높다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UC 버클리를 지원했던 SAT 1500점대 이상 학생들 가운데 합격된 학생보다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을 정도로 UC 버클리의 문은 좁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UC 버클리 입학은 그만큼 치열했고 또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 www.tepi.kr)는 최근 UC 버클리에서 학사 경고 및 제적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소 측은 비록 자료가 “2011년 통계이기는 하나 지금도 그런 트렌드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 국적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UC 버클리에 합격을 했으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다. 연구소는 “UC 버클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UC 버클리는 주립대학이고 학생수가 2만 8,000여명에 달해 학업 부진 학생수가 더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UC 버클리가 내놓은 ‘Continuing the Conversation: The Profile of New UC Berkeley Undergraduates on Academic Probation’라는 자료에 나오는 제적에 대한 통계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Overall, UC Berkeley students perform well academically and have low probation rates. Averaging a first-year grade point average of 3.3 and graduating at record-high rates of over 90%, this success is seen for both freshmen and transfer entrants. However, despite these overall pos-

itive trends a subset of students are placed on academic probation early on in their academic studies at UC Berkeley. While the numbers represent only a fraction of new students (~5%), among those entering in Fall 2011, 200 freshmen and 160 transfers were placed on probation as a result of either their first- or second-term cumulative UC Berkeley grade point average (GPA).

위 내용에 따르면 2011년 신입생 가운데 200명, 편입생 가운데 160명이 학사 정학을 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래교육연구소’는 이 자료의 후반부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한국 국적의 신입생 4%, 편입생 18%가 제적을 당했다.”고 전했다.

‘미래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국적 학생들의 제적 비율은 미국이나 중국, 인도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한국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UC제열에 가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편입을 했다 하더라도 5명 중 1명은 중도탈락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그 이유를 “학생의 능력은 미달되는 데 이름값만 보고 UC 버클리에 지원”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막상 합격은 했지만 UC 버클리가 요구하는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 선택 시 학교의 명성보다는 학생의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충고한 셈이다.

UC 버클리는 2.0 미만의 학점을 3번 받으면 제적을 당한다. 즉 8학기 가운데 3번을 2.0 미만 학점을 받으면 가차없이 제적을 시킨다.

■ 법률 칼럼

자녀의 신분 해결을 위해 미국에 사는 친척에게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면, 저희 자녀들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들의 신분 문제로 고민을 해 오던 한국 부모님들이 자구책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 기회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미국에서의 신분 해결 등 나름대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인척을 통한 입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척 입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입양이 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후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 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에 따라 입양 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양 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에는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전까지만 입양 판결을 받으면 동반 입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입양 판결까지 소요 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이므로,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이 종결되려면 15세 전에는 법원에 입양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27일 발효된 자녀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나이가 18세 미만인 입양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입양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시민권자의 직계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서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인척 간의 입양은 이민국에서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입양이 아닌 가 의심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입양 대상인 자녀와 양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이외에도 친부모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합니다.

즉, 친부모가 왜 입양 결정을 했는지, 직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미국에는 얼마나 자주 왕래를 했는지, 입양 보낸 자녀와는 얼마나 자주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혹시라도 영주권 취득 목적의 위장 입양이라는 판정이 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향후 미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 Dr., #700
La Palma, CA 90623





그레이스 성형외과

아름답고 자신있는 나를 찾는 곳

코(미용) 성형

입술 주름

얼굴(안면) 리프팅 (실리프팅)

눈가 주름 처진 눈 리프팅

보톡스 필러

목 리프팅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닥터 그레이스 김 어스틴

- 카네기멜론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New Jersey와
- Robert Wood Johnson Medical School 박사학위
- 노스캐롤라이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 뉴욕 Quatela Center of Plastic Surgery 성형외과 전문의

IRVINE (949)409-8850

NORTHRIDGE (747)203-7750

16300 Sand Canyon Ave. #1011, Irvine, CA 92618

17114 Devonshire St. #101, Northridge, CA 91325

www.drgracekimaustin.com

@drgracekimaustin